

	<h2>교원연수규정</h2>	규정번호	3-5-2
		제정일자	1995.05.01.
		개정일자	2024.03.01.
		개정차수	11차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 연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단기연수(현장연수)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자질 향상을 돕는다.
2.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실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3. 산학연계를 통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교직원능력을 향상시킨다.
4. 국제간 교류를 통한 이론 및 선진 과학기술 능력을 갖는다.
5. 국제 학술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교수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

제2조(연수의 종류) ① 대학에서 실시하는 국내외 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일반연수(국내학회 포함)
2. 국외일반연수(국외학회 포함)
3. 국내단기연수(현장연수 포함)
4. 국외단기연수
5. 국외장기연수

② 제1항 제5호의 국외 장기연수의 세부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3조(자격 및 인원) 제2조에 의거하여 연수를 실시할 경우 자격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일반연수는 교원으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학회, 교수협의회 등)
2. 국내단기연수(현장연수)는 교원으로 연간 1인 1회에 한하며, 연간 10명으로 한다.
3. 국외일반 및 단기연수는 교원으로 년 1인 1회에 한하며, 연간 10명 이내로 한다.
4. 연수 대상자 선발은 대학 재직기간, 보직경력, 직위 등을 고려한다.

제4조(자격제한) ① 국외일반·단기연수는 학기 중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는 불허한다. 다만, 학회 발표자는 수업변경원을 제출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외일반, 단기연수를 실시하고 최소 4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불허한다.

③ 국외일반, 국외단기연수가 확정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기간 및 시기) 제2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연수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일반연수는 여행기간을 제외하고 4일 이내로 한다.
2. 국내외 단기연수(현장연수)는 5일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며, 동·하계 방학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상기관) 연수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동 유관업체
2. 학생 현장실습 업체
3.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상의 업체
4. 교육부, 관련학회 및 협회 주관(후원)의 연수 및 특별과정
5. 전국 전문대학 학과별, 계열별 공동연수(학교내 자체연수 제외)
6. 대학과 자매결연 대학
7. 전공과 관련된 해외연수 또는 시찰(선진국의 저명대학, 또는 연구소)
8. 어학계열, 인문과학 계열 전공 교원들의 관련 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가

9. 기타 연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제7조(신청서류) 연수희망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수  
개시 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한다.

1. 국내 일반, 단기, 장기연수
  - 가. 국내 연수 승인신청서 1부
  - 나. 증빙서류 1부(연수일정 포함)
2. 국외 일반, 단기연수
  - 가. 국외 연수 승인신청서 1부
  - 나. 증빙서류 1부(원문 및 번역본)
  - 다. 연수계획서 1부

제8조(연수비 지원) ① 국내 일반연수 경비는 연간 총액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횡수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

② 국내 단기연수 경비는 교육경비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국외 일반 및 단기연수 경비는 1회 15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 항공료,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9조(연수보고서) ① 국내 일반, 단기연수는 연수 종료후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총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 일반, 단기연수 종료 후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및 연구비 환수)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사전 허가 없이 연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기타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의무) 연수 허가 취소 및 의무사항 불이행자는 연수기간 중 기지급된 지원경비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규정이 정한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고등에 의한 교원연수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